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08호
2. 제 안 자 : 김달호 의원 외 9명
3. 제안일자 : 2020년 02월 05일
4. 회부일자 : 2020년 02월 12일

2. 제안이유

감채기금의 조성 재원 중에서 “출연금” 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기금전출금” 으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쓰이는 용어 중 “출연금” 을 “기금전출금” 으로 변경함.
- 출 연 금 :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기금전출금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 나.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감채기금의 조성재원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출연금’ 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이하 “기금수립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금전출금’ 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부채규모를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9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10억 4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의 수입 규모는 4,353억 5천 8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8천 8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3억 4천 2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4,260억 2천 8백만원임.
 - 발생 수입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9억 8천 8백만원, ▶차입금 상환 708억 3천 1백만원, ▶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주택도시기금 원리금

상환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3,000억원, ▶시금고 예치 44억 8천 3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할 계획임.

<2020년 감채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A)	2019 (B)	증 감 (A-B)	비 고
수 입	435,358	1,248,062	△812,704	
전 입 금 (일 반 회 계)	988	621,650	△620,662	재투자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도시 철도과) 전입금
이 자 수 입	8,342	10,058	△1,716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426,028	616,354	△190,326	
지 출	435,358	1,248,062	△812,704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 자 포 함)	18,988	220,981	△201,993	재투자금 차입금 잔액 중 원금 (180억원), 이자(9억8천8 백만원) 상환
차 입 금 상 환 (이 자 포 함)	70,831	513,190	△442,359	모집공채 이자 상환 (19년 발행분)
기타회계 전출금	300,000	87,825	212,175	도시철도공채 원금 (3,000억원) 상환
예 치 금	44,983	426,016	△381,033	
일 반 운 영 비	555	50	505	2020년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및 사무관리비

다. 기금의 조성 등(안 제3조·제7조)

- 개정안은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명시된 서울시의 ‘출연금’ 을 ‘기금 전출금’ 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기금수립기준에서는 기금의 수입과목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9개로 명시하고 있음[참고자료].

- 현행 조례상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금전적 이전지출을 의미함.
- 따라서 민간이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세출 외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수입 과목으로는 적절치 않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 행정안전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2013년부터 기금수립기준을 개정해 종전의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한 바 있음.
- 다만, 개정안의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 과목이므로, 기금의 조성 측면에서 볼 때 수입항목인 ‘전입금’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전출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말하며, ‘전출금’을 지원받는 기금 입장에서는 이를 수입 항목 중 ‘전입금’으로 계상¹⁾해야 함.
- 한편, 현행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 중 일부가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과 부합하지 않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1)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2019.3), 68면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u>출연금</u> 단, 일반회계의 <u>출연금</u>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p> <p>가. ~ 다. (생략)</p> <p>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기금으로부터의 <u>차입금</u></p> <p>3. <u>정부지원금 및 융자금</u></p> <p>4. <u>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u></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p> <p>-----</p> <p>-----.</p> <p>1. -----</p> <p>의 기금전출금 -----</p> <p>의 기금전출금 -----</p> <p>-----</p> <p>-----</p> <p>-----</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기금으로부터의 <u>차입금</u></p> <p>3. <u>정부지원금 및 융자금</u></p> <p>4. <u>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u></p> <p align="right"><신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p> <p>-----</p> <p>-----.</p> <p>1. -----</p> <p>로부터의 전입금 --</p> <p>로부터의 전입금 -----</p> <p>-----</p> <p>-----</p> <p>-----</p> <p>-----.</p> <p>가. ~ 다. (개정안과 같음)</p> <p>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기금으로부터의 <u>예수금</u></p> <p>3. <u>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u></p> <p>4. <u>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u></p> <p>5. <u>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u></p>
<p>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u>사무중</u>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u>포함</u>)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p>	<p>제7조(회계공무원) ① ----</p> <p>-----</p> <p>-----</p> <p>-----.</p> <p>-----</p> <p>사무 중 -----</p> <p>포함 -----</p> <p>-----</p>	<p>제7조(회계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 ----- ----- 원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	--	---------------------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

[참고자료 : 기금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 통화금융기관 융자금(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216-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용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u>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u> , 공사공단 등 융자금(513-03)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